

대학발전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2조(명칭) 본 회는 예원예술대학교발전후원회(이하 '후원회'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사무실) 후원회의 사무소는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71번지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1. 예원예술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의 유치 모금 및 관리<개정 2019.2.25.>
2. 예원예술대학교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

제5조(회원) 후원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의 취지와 사업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.

제2장 대학발전후원회<개정 2019.2.25.>

제6조(구성) ① 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본교의 조교수이상으로 임명하며,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기획조정처장, 교학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간사는 행정지원처 팀장이 되며, 업무담당자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①~⑤ 개정 2019.2.25.>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<개정 2019.2.25.>

1. 대학발전에 관한 제언
2.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발전후원회(기부금품) 모집에 관한 사항
4.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5.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,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

<1,2,4 개정 2019.2.25.>

제8조(임기)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.

③ 보궐로 취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<①~③ 개정 2019.2.25.>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①~③ 개정 2019.2.25.>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9.2.25.>

제10조(실무위원회) ①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특수목적기금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①~② 개정 2019.2.25.>
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5.>

<①~⑤ 삭제 2019.2.25.>

제3장 발전기금 관리<개정 2019.2.25.>

제12조(발전기금 접수 및 관리) <삭제 2019.2.25.>

① 발전기금의 접수는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
② 현금을 제외한 기증물품은 행정지원팀과 관련 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한다. 다만,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담당한다.

<①~② 신설 2019.2.25.>

제13조(발전기금 용도 지정) ① 본교의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금의 용도와 교내 사용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정발전기금은 기부금액의 90% 범위에서 사용하며, 나머지 10%는 일반발전기금으로 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.

1. 장학기금
2. 건축기금
3. 현물발전기금
4. 그 밖에 발전기금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발전기금

<①~② 개정 2019.2.25.><1~4 신설 2019.2.25.>

③ <삭제 2019.2.25.>

제14조(발전기금의 사용)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.<개정 2019.2.25.>

1. 교육/연구 활동 지원
2. 교육/연구 시설 확충
3. 장학금 지급
4. 명예퇴직,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따른 퇴직에 일반기부금 사용
5. 기타(대학에 위임)재정은 후원회원의 각종 기여금(기부금, 찬조금, 각종 지원금)과 협찬수입, 사업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.

<1~5 신설 2019.2.25.>

<①~② 삭제 2019.2.25.>

제15조(발전기금의관리) ① 모집한 발전기금은 후원회장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공동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며, 위원회는 일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예원예술대학교에 인계한다.

② 제1항의 일반경비는 모집한 기부금액의 3%를 공제하여 후원회의 운영경비로 별도 충당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기부금품은 일정기간 동안 후원회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후원회장은 기부금품 사용 용도에 대해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고 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기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일반기부금
2. 목적성기부금

<①~② 개정 2019.2.25.><③~④ 신설 2019.2.25.>

제16조(주관부서) ① 발전기금 관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주관한다.<개정 2019.2.25.>

<②~③ 삭제 2019.2.25.>

제17조(회계처리) 모든 발전기금은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5.>

<①~④ 삭제 2019.2.25.>

제18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위원장은 총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2.25.>

<①~③ 삭제 2019.2.25.>

제4장 보칙<개정 2019.2.25.>

제19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사항은 발전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9.2.25.>

제20조(기부금품의관리) <삭제 2019.2.25.>

제21조(기부금품의사용) <삭제 2019.2.25.>

제22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<삭제 2019.2.25.>

제5장 효력발생 및 해산<삭제 2019.2.25.>

제23조(효력발생) <삭제 2019.2.25.>

제24조(해산) <삭제 2019.2.25.>

제25조(시행세칙) <삭제 2019.2.25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20조②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일반경비를 부담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대학발전위원회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. 반경비를 부담한다.